

특별대리인선임심판청구

청 구 인 ㅇㅇㅇ

주민등록번호:

전화 000 - 0000

사건본인 △ △ △

(미성년자) 주민등록번호:

등록기준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
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(우편번호)

전화 000 - 0000

특별대리인 선임심판 청구

청 구 취 지

청구인이 청구외 망 □□□의 ○○은행 ○○저축증서 계좌번호00-00-000000 명의를 변경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번지 □□□(19○○년 ○○월 ○○일생)을 선임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

청구인은 소외 망 ▽▽▽의 처로서 사건본인의 모입니다.

소외 망 ▽▽▽가 20○○. ○. ○. 사망함으로써 ▽▽▽ 명의의 통장을 청구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는 사건본인과 법률상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이므로 사건본 인의 백부인 □□□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.

첨 부 서 류

1. 기본증명서(청구외 망▽▽▽)		1통
1. 가족관계증명서(사건본인)		1통
1.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		1통
(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)		
1. 주민등록등본(청구인, 미성년자, 대리인분)	각	1통
1. 통장사본		1통
1. 신원증명서(대리인)		1통

2000년 0월 0일

청구인 ○ ○ (인)

○ ○ 지 방 법 원 귀중

					or.kr	
	제출법원	자의 주소지 가정법원				
	청구권자	· 친권자 (민법 제921조)				
	제출부수	신청서 1부	관련법규	민법 제921조, 가사소송법 제44조조	15호	
	비 용 · 인지액 : 5,000원(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1항) · 송달료 : 청구인수×3,700원(우편료)×4회분					
	특별대리인	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 되는 행위를 하는				
	선임요건	경우 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지			자	
	건 [호 신	사이에 이해상반되는	는 행위를 하는	는 경우		